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2025. 11. 21.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경과

의안 제653호로 2025년 11월 7일 김지연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관내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독립된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명변경: 영등포구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조례
- 나. 목적 및 정의 변경(안 제1조, 제2조)
- 다. 계획수립 및 지원사업 변경(안 제3조, 제4조)
- 라. 위탁 및 지원, 센터의 사업 변경(안 제6조, 제7조, 제9조)
- 마.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을 정비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2025. 11. 7.~2025. 11. 13.)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정 배경 및 취지

- 「장애인복지법」 제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53조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등포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현행 조례를 제정·시행 (2014. 2. 27.)해 왔음.
- 한편, 2020년에 실시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설 거주자의 69.5%가 ‘현재 생활이 좋아서’ 시설에 남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하였으나,
 -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21.9%), ‘경제적 자립이 자신 없어’(14.7%), ‘가족이 원해서’(9.7%), ‘함께 살 가족이 없어서’(4.8%) 등 지역사회 정착 기반의 부족으로 인해 선택의 여지가 제한되는 경우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시설 외 생활을 희망하면서도 지역사회에서의 주거·일상·

사회참여 기반이 충분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결과임.

-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생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정착까지 포함하는 정책적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서비스 등을 포함한 지원사업을 강화·확대하여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

-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이는 단순히 자립생활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조(목적)는 기존의 “자립생활 지원”을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으로 확대하고,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역사회 정착 지원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명확히 하고 구정의 추진 방향을 보다 확대·구체화한 것임.
- 안 제2조(정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콜자인 “지역사회

정착”를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주거, 일상생활, 건강, 사회참여 등을 자립적으로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로 적절히 규정함.

- 안 제4조(계획수립), 제7조(위탁 및 지원) 및 제9조(센터의 사업)는 제명과 목적에 맞게 조문 내 용어를 “자립생활”에서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으로 변경함.
- 안 제6조(지원사업)는 “주거” 관련 지원사업으로 기존 “주거 환경 개선 지원”에서 “자립생활주택·주거지원서비스 지원”까지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실질적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함.
- 그 밖에 띄어쓰기 등 전반적으로 조문을 정비함.

□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을 ‘자립생활 지원’에서 ‘자립 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지역 사회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원사업으로 주거지원서비스·자립생활주택 지원 등 구체적 주거지원 내용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실질적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내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고 자료

1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